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비상근무에도 불구하고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비상근무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19조)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7. ~ 7.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당 및”을 “수당,”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8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⑦ (생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 및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⑧----- ----- ----- <u>수당</u> , ----- ----- ----- <u>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u> -----.
⑨ ~ ⑫ (생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5